

韓國地籍學會의 發展方向 研究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李 範 寬*

Lee, Beom Gwan

요 지

본 연구는 금년으로 창립 20주년이 되는 한국지적학회의 지난 20년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지적학회의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의 748개 학회를 문헌조사법으로 분석하고 일반적인 문제들은 사례조사법과 면접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지적학회는 학회 임원진의 학회운영 능력의 미숙, 정관규정의 비현실성, 회원자격의 난해성, 회장단에 과다한 권한의 편중, 학회사무실의 미확보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학회활동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정관개정을 통해 학회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둘째는 신규회원의 자격을 강화하며, 셋째는 원칙적인 규정에 의해 학회를 운영하고, 넷째는 학술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며, 다섯째는 학회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perational condi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for the last 20 years, and thereupon, to suggest the progressive solutions for its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the statistical data of the population group of 748 chapters of the society nation-wide, were analyzed by means of literature survey method, while the general problems were addressed by means of the case studies and interviews.

The problems are as follows : First, the staff of the society are poor at managing the society. Second,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society are unrealistic.

Third, the membership of the society is not reasonably qualified. Fourth, the authorities are biased much in the hands of its chairman group.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society could not perform normal activities because it has not secured its office. The solutions to these problems are put forwards as follows : The legitimacy of the society should be recovered by amending the articles of association. Second, the new membership should be more tightly controlled. Third, the society should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and regulations.

Fourth, academic activities should be reinforced. Fifth, the office devoted to the society should be secured.

* 정회원, 慶一大學校 測地工學科 專任講師

1. 序 論

우리나라에 있어서 學會의 嚆矢는 우리말과 글의 연구 및 통일 발전을 목적으로 1908年 8月 31일에 설립된 한글학회이다.¹⁾

해방과 더불어 學會의 創立이 本格化되면서 1950年 이전에 29個이었던 學會가 1960년까지 10年 동안 66個의 學會로 증가하였고, 1970년까지 10年 동안은 105個, 1980년까지는 123個, 1990년까지는 308個, 1991年 이후는 117個가 創立되어, 1994年 12月 기준으로 748個의 學會가 活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韓國地籍學會는 1975年 12月 元永喜 教授께서 地籍學會 創設의 必要性을 主張하는 글³⁾이 과금되어 그 이듬해인 1976年 8月 31日 創立하게 된다. 당시 元永喜 教授는 우리나라의 地籍制度는 매우 正則的이고 統一的으로 이루어진 제도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地籍問題를 경험에 의존하여 解決하려는 것은 限界點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學術的인 研究없이 過去의 經驗만으로는 地籍制度를 發展시킬 수 없으므로 學術的인 研究活動을 통해 韓國의 地籍制度를 발전시킬 수 있는 方案으로서 韓國地籍學會의 創立을 構想하게 된 것이다.

本 研究는 今年으로 創立 20周年을 맞은 韓國地籍學會의 지난 20年의 運營實態를 調查·分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1世紀를 향한 韓國地籍學會의 發展的인 對案을 마련하는 것이 研究의 目的이다. 이러한 研究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研究方法는 現存하는 748個의 學會를 母集團으로 하여 面接法과 文獻調查法을 並行하여 學會와 관련된 統計資料를 調查·分析하고 이를 토대로 發展的인 模型을 導出하고, 導出된 模型과 韓國地籍學會의 實態의 比較·分析함으로써 發展的인 對案을 摸索하기로 한다.

2. 學會의 性格과 運營實態

1. 學會의 一般의 性格

學會란 一般的으로 學問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定義될 수 있다. 그러나 本 研究는 學會의 概念을 “同一한 學問 領域을 研究對象으로 學問的 體系化를 目標로 學術活動을 하는 學者들의 모임”으로 定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 학회는 1950年 이전에는 동일한 學問 領域에 소수의 學者들이 참여함으로써 學會의 數는 29個에 불과하였으나, 근래에는 多數의 學者들이 細分化된 研究對象을 가지고 研究活動을 실시함으로써 學會의 細分化와 隣接 및 類似學會의 創立이 잇따라 학회의 수도 748個로 증가하였다.⁴⁾ 이러한 特定 分野의 細分化된 學會의 量的인 증가는 特定 分野의 學問에 대한 發展의 尺度를 測定하는 重要한 指標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회가 활성화되면 基礎科學의 發展에 기여하게 되고 基礎科學의 發展은 研究活動과 教育活動의 強化에 기여하게 되어 결국은 應用科學의 발전으로 이어져 實務와 產業界의 發展에도 寄與하게 된다.

學會는 學問的 發展과 技術的인 發展에 重要한 役割을 하기 때문에 學術活動의 場으로 學理論을 만드는 工場의 役割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學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學術活動이며, 이러한 學術活動은 學術大會, 學術誌의 發刊, 專門書籍의 發行을 통해 이룩된다. 따라서 學術活動에 대한 量的인 평가는 學術大會의 開催, 學術誌의 發行과 發刊部數, 掲載 論文의 量으로 評價되며, 質的인 側面에서는 論文의 水準으로 評價되고 있다.

學會는 學者들의 모임이며 學問的 體系化를 위해 學術活動에 전념해야 하는 곳이다. 學理論의 開發

1) 韓國大學新聞, 『韓國大學年鑑』, 1996, p.1154.

2) 韓國學術振興財團, 『學會總監』, 1994, p.19.

3) 元永喜, “地籍學會의 創設을 主張한다.”, 『地籍』, 通卷 第15號, 大韓地籍公社, 1975, pp.43-47.

4) 韓國學術振興財團, 前掲書, pp.476-488. 上地에 關聯한 學會로는 韓國土地法學會, 韓國土地公法學會, 韓國土地行政學會, 韓國不動產法學會, 韓國不動產分析學會, 大韓不動產學會, 韓國不動產學會, 國際不動產學會 등이 있으며, 地域開發에 있어서도 韓國地域開發學會, 韓國地域福祉政策學會, 韓國地域社會開發學會, 韓國地域社會開發協會, 韓國地域學會 등이 있다.

을 위한 學術의 研究發表를 통한 基礎科學의 發展을 坦坦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實用性을 찾는 產業體와 應用分野의 發展에 寄與하기 위해 研究機能과 教育機能을 開發하는 場이 바로 學會인 것이다.

2. 學會의 運營實態

우리나라에 있어 學會의 現況은 <표 1>과 같이 人文·社會 分野에 444개의 學會가, 自然科學分野에 304개의 學會가 創立되어 總 748개의 學會가 學術活動을 하고 있다.

이들을 設立年代, 地域別, 法人登錄 有無, 平均 會員數로 구분하여 運營의 實態를 分析하기로 한다.

<표 1> 우리나라 學會 現況

分野別	人文·社會分野				自然科學分野					計
	어문	인문	사회	예체능	이학	공학	의약학	농학	수해양	
學會數	90	146	185	23	70	84	95	44	11	748

資料 : 韓國學術振興財團, 『學會總覽』, 1994. p.19.

먼저 <표 2>는 현존하는 748개의 學會를 設立年도를 기준으로 10年 單位로 나누어 整理한 것이다.

<표 2> 學會의 年代別 設立 現況

分野 年度	人文·社會分野				自然科學分野					계
	어문	인문	사회	예체능	이학	공학	의약학	농학	수해양	
1950년 이전	2	4	3	1	4	4	11	.	.	29 (3.9%)
1951-1960	6	15	14	2	7	2	14	5	1	66 (8.8%)
1961-1970	18	19	19	1	13	11	13	7	4	105 (14.0%)
1971-1980	13	23	30	1	9	13	22	11	1	123 (16.5%)
1981-1990	42	62	78	12	30	36	24	19	5	308 (41.2%)
1991년 이후	9	23	41	6	7	18	11	2	.	117 (15.6%)
計	90	146	185	23	70	84	95	44	11	748 (100%)

資料 : 韓國學術振興財團, 『學會總覽』, 1994. p.19.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學會는 1950년대 이전에는 自然科學分野가 人文·社會分野보다 활성화되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醫藥學分野가 가장 많은 11個 학회로서 37.9%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0年代에는 自然科學分野 보다는 人文·社會分野의 學會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社會分野가 185個 學會로 가장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時代別로는 1980年代가 學會設立의 호황기로 나타났으며, 이 시기에 현존하는 學會의 41.2%가 창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學會를 地域的으로 구분하면 <표 3>과 같이 대부분의 학회는 地方이 아닌 首都圈에 74.1%가 편중되어 있으며, 그것도 인천이나 경기도 아닌 서울에 66.3%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으로는 大邱, 釜山, 大田, 光州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학회를 보유한 도는 제주도가고, 육지에서는 충청남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學會는 首都圈에 대부분 존재하며 주로 1980年代에 창립된 人文·社會分野의 學會이며 구체적으로는 社會分野의 학회로 分析된다.

<표 3> 地域別 學會 現況

分野別 地域別	人文·社會分野				自然科學分野					合計	
	어문	인문	사회	예체능	이학	공학	의약학	농학	수해양		
首都圈	서울	41	85	139	14	43	66	82	13	3	496
	인천	.	3	.	.	1	4
	경기	3	3	8	.	5	4	5	26	.	54
	소계	44	101	147	14	49	70	87	39	3	554
地方	부산	8	6	10	1	2	2	.	1	7	37
	대구	10	11	10	.	3	1	4	1	.	40
	광주	3	5	2	.	2	2	2	.	.	16
	대전	7	4	2	1	3	8	.	3	.	28
	강원	3	1	1	.	2	7
	충북	1	5	3	2	4	15
	충남	2	1	1	.	.	4
	전북	1	4	3	3	1	1	1	.	.	14
	전남	1	1	1	.	2	5
	경북	3	4	5	2	1	15
경남	7	3	1	.	1	12	
제주	1	1	
소계	46	45	38	9	21	14	8	5	8	194	
計	90	146	185	23	70	84	95	44	11	748	

資料 : 韓國學術振興財團, 『學會總覽』, 1994. p.19.

〈표 4〉는 748개의學會를 法人과 非法人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으로 人文·社會分野에는 22개의 학회가, 自然科學分野는 58개의學會가 法人으로登錄되어 總 80個(10.7%)의學會가 法人化 되어 있다. 學會의 法人化는 人文·社會分野 보다는 自然科學分野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工學分野가 49.0%를 차지하고 있다.

人文·社會分野는 학회의 양적인 우세에 있으면서도 學會의 法人化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學會活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學會가 事業活動의 主體的인 役割을 할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있어 구태여 主務官廳에 등록하여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인문분야로 2.1%이고, 다음은 의학분야로 4.2%로 나타났다.

그러나 人文·社會分野에 비해 工學分野는 입장이 다르다. 學會가 하나의 法人格體로 각종 사업에 산학공동의 사업주체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學會의 法人化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社團法人 韓國地籍學會 創立 發起人들은 기존의 韓國地籍學會를 社團法人으로登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1992년 2월 25日 發起人 總會를 開催하여 또 다른 학회로서 社團法人 韓國地籍學會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5월 18日 社團法人 韓國地籍學會 發起人들은 주무관청인 內務部로부터 法人登錄 인가를 받고, 6월 3日에는 既存의 韓國地籍學會를 대의원에 의한 書面決意로 解散하였다.

〈표 4〉 法人登錄別 學會 現況

分野 性格	人文·社會分野				自然科學分野					總計 (%)
	어문	인문	사회	예체능	이학	공학	의학	농학	수해양	
社團法人	3	3	11	5	9	39	4	2	4	80 (10.7%)
非法人	87	143	174	18	61	45	91	42	7	668 (89.3%)
總學會數	90	146	185	23	70	84	95	44	11	748 (100%)

資料：韓國學術振興財團, 『學會總覽』, 1994. p.20.

〈표 5〉는 學會에 가입한 회원들을 類型別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學會別 平均會

員은 561名이다. 그 가운데 人文·社會分野가 平均 314名이며, 自然科學分野는 807名으로 나타났다. 自然科學分野에서는 工學分野가 978名의 正會員을 포함하여 總 1,343名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量的인 側面에서 가장 활성화된 것으로 調査된다. 人文·社會分野는 自然科學分野보다 큰 편차없이 300名 內외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學會別 會員 加入 現況

分野別	資格別	資格別					學會當 平均 會員數	
		正會員	準會員	特別會員	終身會員	名譽會員		其他
人文 社會	어문분야	216	36	5	5	2	4	268
	인문분야	233	45	8	16	4	12	317
	사회분야	278	20	6	17	1	17	339
	예체능분야	207	24	9	20	.	5	265
	평균회원	247	31	7	14	2	12	314
自然 科學	이학분야	574	87	34	11	3	81	790
	공학분야	978	136	23	138	4	63	1,343
	의약학분야	418	51	6	9	1	12	498
	농학분야	444	79	23	14	1	17	578
	수해양분야	316	19	18	24	1	27	404
	평균회원	609	86	20	46	2	44	807
全體 平均會員數		428	59	14	30	2	28	561

資料：韓國學術振興財團, 『學會總覽』, 1994. p.20.

〈표 6〉은 748개의學會를 會員規模別 單位로 구분하여 學會別로 나타낸 것이다.

〈표 6〉 會員規模別 現況

規模別	人文·社會				自然科學					計
	어문	인문	사회	예체능	이학	공학	의약학	농학	수해양	
300미만	67	90	121	19	21	11	36	9	4	378
300-500	13	29	31	1	17	16	31	14	3	155
501-800	6	18	18	1	15	15	15	12	4	104
801-1,000	.	5	8	1	4	6	4	3	.	31

1,000이상	4	4	7	1	13	36	9	6	.	80
計	90	146	185	23	70	84	95	44	11	748

資料：韓國學術振興財團, 『學會總覽』, 1994. p.21. 再作成

〈표 6〉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회의 50.5%는 대부분 300명 미만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9.5%의 학회는 300명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학회로 나타났다.

韓國地籍學會는 96년도 현재 95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 회원의 量的인 側面에서 전체 학회 가운데 상위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그러나 韓國地籍學會는 학회활동의 質的인 側面에서는 〈표 7〉과 비교할 때 회원의 量的 規模에 비해 學術活動에 전념할 수 있는 大學教授나 研究員인 회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따라서 기존의 大學教授나 專門 研究所의 研究員 기타 碩士學位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會員 職位別 現況

職位別	人文·社會					自然科學					計
	어문	인문	사회	예체능	이학	공학	의약학	농학	수해양		
大學教授	7,793	14,773	27,090	1,947	13,482	24,380	9,010	6,542	1,205	106,222	
研究員	822	2,788	5,475	268	10,922	18,933	4,121	6,112	583	50,024	
其他	15,536	28,678	30,213	3,879	30,898	69,461	34,207	12,792	2,655	228,319	
合計	24,151	46,239	62,778	6,094	55,302	112,774	47,338	25,446	4,443	384,545	

資料：韓國學術振興財團, 『學會總覽』, 1994. p.21. 再作成

〈표 8〉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定期刊行物의 刊別 現況을 나타낸 것이다. 전국 748개의 학회중에서 정기적이거나 부정기적이거나 학술에 관한 간행물을 발간하는 학회는 626개 학회이며, 대부분 年間 1회 발간이 323개 학회로 52.1%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年間 2회 발간으로 203개의 學會가 32.4%를 차지하고 있다.

5) 現在 全國 地籍學關聯 教授는 30명선이 넘고 있지만 實質的으로 韓國地籍學會를 통해 활동하는 會員은 15명정도이며 나머지 教授들은 關聯된 學會나 별도의 단체로 學術活動을 하고 있다.

그러나 年間 6회 이상을 발간하는 학회도 53개 學會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韓國地籍學會는 年間 1회의 學術誌와 半年間 1회의 消息誌를 발간하고 있다.

〈표 8〉 學會別 定期刊行物 發刊 現況

分野	刊別	隔年刊		年刊	半年刊	季刊	隔月刊	月刊	不定期	合計
		어문	인문	사회	예체능	이학	공학	의약학	농학	
人文社會	어문	3	67	6	2	.	1	4	77	
	인문	5	73	26	9	2	.	9	144	
	사회	1	107	54	20	2	.	17	153	
	예체능	.	16	2	1	.	.	.	18	
自然科學	이학	1	21	30	23	5	1	9	64	
	공학	1	10	25	38	15	11	8	71	
	의약학	.	20	41	17	5	3	5	81	
	농학	1	7	16	17	7	1	.	41	
	수해양	.	2	3	5	.	.	.	7	
學會數		12	323	203	132	36	17	52	626	

資料：韓國學術振興財團, 『學會總覽』, 1994. p.24. 再作成

〈표 9〉는 학회마다 발간하는 定期刊行物의 種類를 나타낸 것이다.

전국 748개의 학회중에서 1종의 定期刊行物도 발간하지 않는 학회는 16.3%로 122개 學會이며, 58.4%는 1종의 定期刊行物을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6종 이상의 定期刊行物을 발간하는 學會도 2개가 있으며 모두 人文·社會分野의 學會로 나타났다.

〈표 9〉 定期刊行物 發刊 種類 現況

分野	發刊種類	無發行	1種發行	2種發行	3種發行	4種發行	5種發行	6種以上	計
		어문	인문	사회	예체능	이학	공학	의약학	
人文社會	어문	13	58	14	2	1	2	.	90
	인문	32	87	19	4	3	.	1	146
	사회	32	103	31	14	3	1	1	185
	예체능	5	15	2	1	.	.	.	23
自然科學	이학	6	37	18	5	2	2	.	70
	공학	13	42	15	13	1	.	.	84
	의약학	14	59	18	4	.	.	.	95
	농학	3	31	9	.	.	1	.	44
	수해양	4	5	2	11
學會數		122	437	128	43	10	6	2	748

資料：韓國學術振興財團, 『學會總覽』, 1994. p.24. 再作成

〈표 10〉은 1992년과 1993년도 全國 學會別 學術 行事 開催 現況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회들은 1년에 1-2회 이상의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학회가 약 80%로 나타났으며, 自然科學分野보다는

人文·社會分野가 가장 왕성한 학술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서도 社會分野의 學會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표 5>에서 分析된 會員의 量的 規模는 自然科學分野가 많아도 학술활동은 人文·社會分野가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회원의 數가 量的으로 풍부하다고 學術活動이 활발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표 10> 學術行事 開催 現況

分野	1992年					1993年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人文·社會	어문	26	20	14	5	4	69	29	23	13	2	1	68
	인문	45	30	20	1	1	97	42	35	21	1	3	102
	사회	54	52	24	8	5	143	54	60	23	10	1	148
	예체능	6	5	.	1	.	12	7	4	2	1	.	14
自然科學	이학	41	14	6	2	.	63	39	15	3	2	2	61
	공학	8	31	18	4	3	64	93	34	19	3	2	67
	의약학	46	28	2	3	2	81	52	23	6	3	.	84
	농학	11	21	1	.	.	33	16	19	1	.	.	36
	수해양	.	7	2	.	.	9	2	6	1	.	.	9
농학	237	236	87	24	15	571	250	219	89	22	9	580	
	41.5%	36.4%	15.3%	4.2%	2.6%	100%	42.4%	37.2%	15.1%	3.7%	1.6%	100%	

資料：韓國學術振興財團, 『學會總覽』, 1994, p.34. 再作成

<표 11>은 學會別 事務所 保有 現況을 나타낸 것이다. 全體 748個 學會中 86.2%인 645個의 學會가 事務所를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保有形態로는 첫째가 學會長의 研究室을 使用하는 경우가 45.0%이고, 다음은 無償賃借로 28.2%, 그 다음은 10.0%는 기타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學會別 事務所 保有 現況

區分	人文·社會分野					自然科學分野					計
	어문	인문	사회	예체능	이학	공학	의약학	농학	수해양		
學會所有	4	8	4	2	6	26	5	1	.	.	56
有償賃借	6	9	13	1	5	19	53
無償賃借	16	24	43	6	21	25	23	17	7	.	182
學會長의 研究室	41	61	92	10	26	15	30	15	.	.	290
其他	9	8	21	4	1	6	9	6	.	.	64
合計	76	110	173	23	59	91	67	39	7	645	

資料：韓國學術振興財團, 『學會總覽』, 1994, p.33. 再作成

그러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學會가 學會事務所를 소유하고 있는 學會도 589個 학회 가운데 8.7%인 56個 學會로 나타났다. 그러나 韓國地籍學會는 아직까지 事務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3. 韓國地籍學會의 運營實態 分析

1. 韓國地籍學會의 胎動과 成長

1) 韓國地籍學會의 胎動

韓國地籍學會의 胎動은 1975년도 12月 三地 元永喜 教授의 “地籍學會의 創設을 主張한다”라는 地籍講座로 부터 출발된다. 三地 元永喜 教授는 강좌에서 우리나라의 地籍制度가 창설당시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學術的인 뒷받침 없이 단지 순수한 經驗만에 의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에 體系的인 發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주변에서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는 운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여러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오직 우리의 地籍制度만은 舊殼을 벗지 못하고 현실에 뒤떨어져서 허다한 모순점을 드러내 놓은 채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70년 동안 등한시되었던 學術的인 研究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地籍制度의 면목을 일신하고 나아가서는 전세계 地籍制度의 발전까지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地籍學會를 創立해야 한다고 했다. 70년의 연륜을 쌓고 있는 한국 지역에서 아직까지 地籍學會가 없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韓國地籍學會의 必要性을 主張하였다.

이후 1976年 8月 31日 우리들은 회원상호간의 협동으로 地籍에 관하여 풍부한 운영 경험을 살려 學術的인 研究의 體系化를 促進함으로써, 韓國地籍學會의 급속한 발전과 나아가서는 전세계 地籍制度의 발전에 까지 크게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여기에 韓國地籍學會를 創立한다라는 創立趣旨文을 낭독하고 창립발기인 元永喜 議長과 김갑수, 김세기, 김영배, 김해선, 성창규, 이경철, 이만상, 이부발, 이종호, 조성구, 지종구 등이 발기총회를 개최함으로써 韓國地籍學會가 탄생하게 되었다.

2) 韓國地籍學會의 成長

1976年 8月 31日에 韓國地籍學會가 創立되었지만 學會를 이끌어갈 任員과 理事陣의 構成이 어렵게 되자 發起人 總會는 初代 元永喜 會長과 김갑수, 김해선, 이부발, 지중구회원으로 受任會員制를 구성하여 과도기적으로 會長團會議의 임무를 대행하게 된다.

9月 1日 초대 최용진사무국장을 임명하고, 1977年 10月에는 定款施行規程을 受任會議에서 제정하고, 11月 15日 최초로 韓國地籍學會報 創刊號가 발행된다. 1978年 6月10日 元永喜會長이 重任되었으며, 1979년에는 韓國地籍學會報 2號가 발행된다. 1981년에는 韓國地籍學會報 3號의 발행과 元永喜會長의 連任이 시작되었고, 1982年 韓國地籍學會報 4號가 발행되었다.

1983年 9月 10日 元永喜 會長이 사임과 동시에 고문으로 추대되었으며, 제2대 김인태회장이 취임된다. 總會에서는 韓國地籍學會定款을 1차로 개정하고, 韓國地籍學會 定款施行規程의 5차 개정과 準會員規則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1984年 韓國地籍學會報 5號가 발행되었고, 1985년에는 “最新地籍制度에 관한 國際學術會議”와 韓國地籍學會報 6號의 발행이 있었다.

1986年 韓國地籍學會報 7號를 발행하였으며, 1987년에는 初代 元永喜 會長의 사망과 더불어 88년까지 學會運營의 짐체기가 계속된다. 1989年 韓國地籍學會報 8號가 발행되었으며, 조성구회장이 취임한다.

1990年 韓國地籍學會 消息誌가 創刊되어 2號까지 발행되었으며, 최한식 사무국장이 임명을 받게 된다. 1991年 韓國地籍學會 消息誌 3號와 4號가 발행되었다. 1992년에는 비상진사무국장이 임명되었고, 2月 25日에는 社團法人韓國地籍學會의 設立을 위한 發起人 總會가 개최된다. 5月 18日 社團法人 韓國地籍學會의 法人 設立登記가 되었으며, 6月 3日에는 기존의 韓國地籍學會를 書面決意로서 解散한다.

6月 26日 韓國地籍學會 消息誌 5號가 발행되었고, 11月 28日에는 臨時總會를 개최하였으나 3명만이 참석하여 60명의 위임장으로 社團法人의 韓國地籍學會의 會長과 任員團을 구성하여 기존의 韓國地

籍學會의 회장인 조성구회장을 社團法人 韓國地籍學會의 會長으로 선출한다.⁶⁾

1993年 韓國地籍學會 消息誌 7號와 8號를 발행하고, “土地登錄公示制度의 統合 方案에 관한 懇談會”를 개최한다. 韓國地籍關係法令集과 社團法人 韓國地籍學會誌 創刊號를 발행한다.

1994년에는 韓國地籍學會 消息誌 9號와 10號를 발행하고, 韓國地籍學會誌 2號를 발간한다. 1995年 5月 6日 臨時總會에서 김갑수회장이 선임되고, 조성구 전회장이 고문으로 추대된다. 韓國地籍學會誌 3號가 발행되고, 韓國地籍學會 消息誌 11號와 12號가 발행되었다.

1996年 한스크노프박사 초청 國際學術講演會가 개최되었으며, 韓國地籍學會 消息誌 13號가 발행되고, 韓國地籍學會 創立 20周年 행사가開催된다.

이상으로 韓國地籍學會의 20년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았다. 韓國地籍學會 20년에서 가장 큰 시련은 韓國地籍學會의 解散과 社團法人 韓國地籍學會의 설립이다.

따라서 韓國地籍學會의 창간 20년에 대한 역사를 잇는 正統性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단절된 學會誌의 通卷番號, 會長의 就任 世代, 消息誌의 通卷番號 등의 정리문제가 남아 있다. 그간 20년동안 의사결정은 定期總會를 代議員總會로 대체하고, 代議員總會는 다시 書面決意로 대신하는 運營方法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운영방법과 정관상의 非 現實의인 規定으로 韓國地籍學會의 20년은 胎動과 試鍊 그리고 沈滯期를 거쳐 20代의 青年學會로 자랐다. 따라서 未來의 韓國地籍學會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 韓國地籍學會의 단절된 학회의 정통성을 찾고, 定款의 改正,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韓國地籍學會의 運營實態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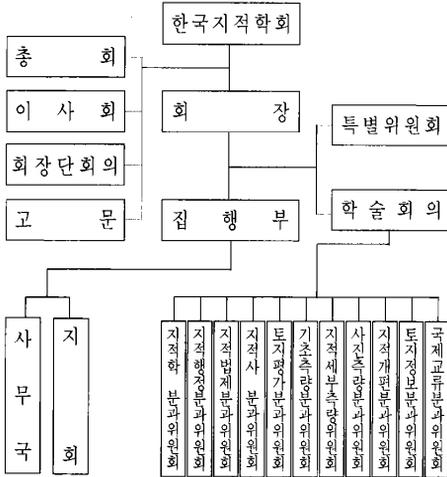
1) 機構

韓國地籍學會는 定款 第23條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總會와 理事會, 會長團會議, 顧問, 學術會議,

6) 1992年 11月 28日 韓國地籍學會 臨時總會 會議錄 參照.

特別委員會와 執行部를 둔다. 이러한 기관들의 기관별 세부적인 役割과 運營實態를 分析하기로 한다.

<그림 1> 韓國地籍學會 機構



(1) 總會

總會는 韓國地籍學會에 있어서 定款의 制定과 變更, 任員의 選任, 事業計劃 및 豫算의 承認, 事業報告 및 決算의 承認, 學會의 解散에 관한 議決, 기타 이 회의 基本 運營事項의 議決 등을 추진하는 가장 권위있는 議決機關이다. 그러나 韓國地籍學會에 있어 總會는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韓國地籍學會의 定期總會는 대부분 代議員總會로 대체되었고, 대의원총회는 다시 書面議決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總會가 가지고 있는 本來의 役割과 機能이 발휘되지 못하여 회원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이러한 운영은 점점 會員의 無關心과 參與意慾을 잃게 하여 학회운영의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장들이 임기중 정회원에 의한 定期總會를 1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형식 例外的인 應急措置式으로 代議員에 의한 書面議決로 마무리 하였다. 이러한 책임은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의 학회경영에 대한 지도력 부족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總會가 總會로서의 役割과 부여된 機能을 발휘

하기 위해서는 量的인 會員의 확대보다는 質的인 會員의 確保와 확보된 회원관리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定款을 改正하여 定期總會의 理事會는 書面總會로 대신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理事會

理事會는 當然職 理事 4인과 選出職 理事 11인이 내로 總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선출직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된다. 會長團會議 會長과 3명의 副會長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韓國地籍學會 理事會는 總會 다음으로 중요한 議決機關으로서 總會에 상정할 議案들의 議決, 會費 其他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의 議決, 海外에 파견할 人士의 選定, 任員의 補選, 定款을 시행하기 위한 規程과 그 變更, 기타 이 회의 重要 運營事項의 議決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 또한 定期總會에서 회원들이 직접선거에 의해 選出하기 보다는 代議員에 의해 書面總會로 選出했다는 점에서 會員多數의 意見이 반영되는 데는 限界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회원의 자유로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의 원칙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3) 會長團會議

會長團會議의 구성은 會長 1인과 副會長 3인으로 구성되며, 性格은 理事會 다음으로 중요한 議決機關으로서 主要 會務의 處理에 관한 議決, 理事會에 부의할 議案의 議決, 定款 및 規程을 시행하기 위한 細則의 制定과 그 變更, 기타 重要한 案件 등을 처리한다. 會長團會議에 회장과 부회장은 모두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이다.

會長은 會務를 統括하고 本 學會를 대표한다. 歷代 會長과 在任 期間은 <표 12>와 같으며 會長은 會長團會議의 議長, 當然職 理事와 學術委員으로서 支會長과 事務局長, 特別委員會의 委員등을 임명할 뿐만아니라 分科委員長 및 分科委員의 解任權을 갖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韓國地籍學會에 있어 任員은 定款 第14條에 의거 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로 되어 있다. 따라서 당연직 이사의 중핵 부분을 피하면 임원은 최대 17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본다.

〈표 12〉 歴代 會長과 在任期間 現況

代	會 長	在 任 期 間
초대	원 영 회	1976. 8. 31-1983. 9. 10 (7년)
2	김 인 태	1983. 9. 11-1989. 4. 30 (6년)
3	조 성 구	1990. 5. 1-1995. 5. 6 (5년)
4	김 갑 수	1995. 5. 7-현재

註: 本 研究는 研究目的에 따라 會長 任期中心의 世代區分 보다는 在任會長中心으로 世大區分을 실시하였으며, 社團法人韓國地籍學會의 會長도 기존 韓國地籍學會의 世대를 잇는 것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會長任期는 定款上 次期會長 選出 日까지가 原則이나 書面總會서는 그 해 12月 31까지로 한다는 例外 規定이 적용되나 本 연구는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韓國地籍學會의 任員과 學術會員 등으로 학회 활동에 관여된 회원은 매우 소수로서 임원선거는 이들 회원끼리의 자리변경이었다. 따라서 소수 회원이 학회의 요직에 선임됨으로써 다수의 회원에게는 參與意識을 잃게 하였다.⁷⁾

이제 韓國地籍學會도 20년을 자란 靑年學會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학회운영도 소수의 임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多數會員이 참석할 수 있도록 會長團의 當연직 理事와 學術會員등의 겸직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리고 副會長團을 會員의 職場에 따라 第1, 第2, 第3副會長으로 분류한 획일적인 정관을 변경하여 企劃擔當副會長, 學術擔當副會長, 組織擔當副會長, 財政擔當副會長으로 개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4) 顧問

顧問은 會長團會議가 추천하여 理事會의 決定을 통해 推戴된다. 추대된 고문은 총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定款은 약간명의 顧問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顧問은 이용택, 손승덕, 원영희, 최병삼, 김인태, 조성구 등이다. 이처럼 학회회원 출신이 아닌 인사를 단지 大韓地籍公社 社長이라는 側面에서 顧問으로 추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문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존 顧問의 位相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고문제도는

형식적 체면유지의 고문 추대라면 차라리 名譽會員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顧問은 本 學會 會長이나 任員出身의 원로중에서 추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學術會議

理事會나 會長團會議가 학회발전의 외적 및 양적인 측면을 담당한다면 學術委員會는 學會의 본래 목적에 대한 質的인 側面을 담당하게 된다. 學術會議는 學術委員으로 구성되며, 學術委員은 11개의 分科委員會의 長이 된다. 分科委員長은 學術會議에서 선출하며, 本 學會가 행하는 地籍에 관한 學術研究와 모든 分科委員會에 地籍에 관한 學術研究 동향을 제시하며 11개 分科委員會의 연구결과를 심사하여 會長에게 제출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그림 1〉의 기구표와 같이 地籍學, 地籍行政, 地籍法制, 地籍史, 土地評價, 基礎測量, 地籍細部測量, 寫真測量, 地籍改編, 土地情報, 國際交流 등 11개의 分科委員會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에는 18개 分科委員會로 구성되었으나 분과의 명칭변경과 축소로서 현재의 11개 分科委員會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분과위원회의 구분이 學術的인 分類보다는 機能的인 分類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本 研究는 地籍學分科, 地籍制度分科, 地籍測量分科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地籍制度는 法, 行政, 運營의 側面을 포함하고, 地籍史와 地籍政策까지 담당하게 되며, 地籍測量分科는 地籍에 대한 調查活動을 포함한 廣義의 概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學術會議는 會長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었으며 副會長은 각각 부의장이 되었다. 따라서 그 역할 면에서 會長團에 지나친 權力이 偏重되어 있어 多數 會員의 創意力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라도 學會運營의 役割分擔論이 필요하다.

學術會議는 本 學會의 學術活動에 대한 최고의 기관으로서 學術擔當副會長, 3명의 分科委員長, 事務局長, 編輯委員 10명을 포함 總 15명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學術擔當副會長은 編輯委員長으로 事務局長을 幹事로 하여 10명의 編輯委員을 理事會에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을 갖도록 한다. 編輯委員은 學術誌의 量的·質的 水準의 提高을 위해 論

7) 韓國地籍學會, 『韓國地籍學會誌』, 通卷 第1-11號, 1977-1989; 『韓國地籍學會 消息』, 通卷 第1-13號, 1990-1996. 任員 名單 參照.

文審査와 論文審査委員의 選定, 論文發刊 및 定期刊行物, 圖書發刊에 대한 編輯會議을 실시하며 그에 대한 實務責任을 지도록 한다.

(6) 特別委員會

特別委員會는 特別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議長, 副議長 및 委員으로 구성되며, 委員은 會長이 임명한다. 會長은 特別委員會가 처리한 사안이 완성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委員會를 解散하여야 한다. 그러나 總會와 理事會, 會長團會議에서 기타 안건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特別委員會의 설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7) 執行部

本學會는 會長 아래 3人的 副會長 그리고 그 밑에 事務局을 두고 있다. 事務局에는 事務局長이 庶務, 經理, 文書, 人事, 涉外, 出版 및 會議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支會는 理事會의 決定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支會長은 會長이 임명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支會長을 會長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支會長의 選출권은 지회별로 選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지회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며, 支會長은 當然職 代議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韓國地籍學會를 20년동안 이끌어 온 핵심적인 결정은 代議員에 의해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대의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代議員은 總會前 구성하고 總會後 自動的으로 解散되는 臨時機構이다. 이들의 구성은 支會別로 會員 30명까지는 1명의 代議員을, 20명 초과서 1명의 대의원을 추가하며, 그리고 초과 회원이 있을 때는 또 1명이 대의원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다.

2) 定款 및 規程 現況

(1) 定款

우리나라 民法 第32條는 非營利를 目的으로 事業을 추진하고자 할 때 社團法人 또는 財團法人의 요건을 갖추어 主務官廳의 허락을 받아 法人化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主務官廳의 許可를 득하기 위해서는 民法과 公益法人의 設立 運營에 관한

法律에 따라 定款의 制定이 필요하게 된다.

韓國地籍學會의 定款은 1976年 8月 31日 制定되어 1983年 9월 10日 1次 改正, 1989年 11月 4日 2次 改正되었다. 그리고 1992年 2月25日에는 既存의 學會가 解散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定款을 制定하여 社團法人 韓國地籍學會를 創立하였다.

本 研究는 既存의 舊 定款과 新 定款으로 나누어 定款의 構成과 重要內容을 <표 13>과 같이 分析해 보기로 한다. 그러므로 韓國地籍學會의 20年の 運營實態를 分析하고자 한다.

<표 13> 舊 定款과 新 定款의 比較 現況

區分	重要內容	舊 定 款	新 定 款
總綱에 關聯된 事項	名稱	한국지적학회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目的	회원상호간 협동, 지적에 관한 학술연구의 체계화, 지적제도 발전에 기여	구 정관과 동일
	事務所	서울특별시내 둔다.	구 정관과 동일
事業	1. 지적에 관한 학술연구 및 발표 2. 지적에 관한 전문연구지 기타 도서의 발행 3. 지적에 관한 수련회 등의 개최 4. 지적에 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안의 조사·감정 및 평가의 실시 5. 지적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학술교류 6. 지적에 관한 대정부 선의 7. 지적상의 제정 운영 8.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구 정관과 동일	
會員	種類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	구 정관과 동일
任員	種類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 10인 이상 30이내 감사 2인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수를 15인 이내로 하는 것 이외는 동일
機關	種類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 고문, 학술회의, 특별위원회	집행부를 신설하고 그 이외는 동일
會議	種類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 학술회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 정관과 동일
財政	財源	회비, 국비 또는 지방비 보조, 찬조금, 사업수입, 기타 수입	구 정관과 동일

이상에서 新 定款은 舊 定款의 內容과 많은 부분이 일치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舊 定款을 버리고 新 定款을 制定하기 보다는 定款의 학회명 개정으로 韓國地籍學會에서 社團法人 韓國地籍學會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회 운영의 영속성을 확보하여 學會의 沿革, 學會誌, 消息誌의 通卷 發行號數의 連續性, 會長의 世代數, 學會의 正統性 問題, 新 定款과 規程들의 制定日時 등의 문제로 현재로서는 韓國地籍學會 20周年의 正統性을 영위하는 데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韓國地籍學會의 20周年을 回顧하고 21世紀의 비전을 조명하는 현 시점이 韓國地籍學會의 20年을 다시 찾는 방향으로 定款改正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2) 定款施行規程

定款施行規程은 定款의 規定을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한 內容을 規定하기 위해 1977年 10月 21日 制定하여 5次에 걸친 改正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新 定款施行規程은 1992年 2月 25日 制定 되었다. 新 定款施行規程의 제정에 대한 것도 制定보다는 改正으로 正統性을 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規程과 準會員規則은 理事會에서 制定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3) 準會員規則

準會員規則은 定款 第10條에서 規定한 韓國地籍學會의 準會員에 관한 範圍 및 資格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3年 9月 10日 制定되었다. 準會員規則은 總 4條와 附則으로 구성되었으며 第1條는 目的,

第2條는 準會員의 資格範圍, 第3條는 正會員이 될 資格, 第4條는 正會員의 신청에 관한 事項을 규정하고 있다. 準會員의 具體的인 資格範圍는 國內외의 大學 또는 專門教育機關에서 地籍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을 수업하고 있는 在學者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관에서는 준회원 규격에 대한 내용을 定款 第8條에서 규정하고 있다.

3) 會員의 現況

韓國地籍學會의 會員 現況은 창립 초기 12名の

발기인 총회로 출발하여 1977年 315名の 정회원을, 1991년에는 1,242名の 회원을, 현재는 <표 14>와 같이 950名の 회원을 보유한 대규모의 학회로 발전하였다. 회원은 定款上의 규정에 따라 名譽會員과 正會員, 準會員으로 구분되며,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會長, 副會長, 理事, 監事 등 임원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正會員들이 참석한 定期總會보다는 理事會에서 임원후보를 내정하여 대의원에 의한 書面總會에서 신임을 묻는 방법으로서 엄격하게 보면 정회원의 選舉權과 被選舉權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韓國地籍學會는 회원수면에서 전국의 748個의 學會중에서 上位 15%에 머무르는 우수한 학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원의 구성에서는 학회 本來的인 役割과 機能인 學術活動을 원활하게 수행할 회원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회원관리와 所官廳, 地籍公社, 學界로 나누어 회원을 관리하는 學會運營의 기법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회는 전·현직과는 관계없이 학문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定款上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과 대우로 학회 활동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표 14> 韓國地籍學會의 會員 現況

年 度	會 員 現 況
1977. 11	315명
1979. 12	590명
1981. 8	646명
1982. 12	652명
1991. 6	1,242명
1996. 6	950명

資料: 韓國地籍學會, 『韓國地籍學會報』, 通卷 1-8號, 1977-1989; 『韓國地籍學會誌』, 通卷 1-3號, 1993-1995; 『韓國地籍學會消息』, 通卷 1-13號, 1990-1995.

학회의 성격은 학회의 構成員인 會員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本 研究는 韓國地籍學會의 構成員인 회원들을 地域別, 職業別로 나누어 分析하기로 한다.

(1) 地域別 會員 現況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회원수 (%)	54 (5.8)	58 (6.2)	34 (3.6)	55 (5.9)	21 (2.2)	49 (5.2)	54 (5.8)	215 (23.0)	73 (7.8)	68 (7.3)	50 (5.3)	70 (7.5)	57 (6.1)	70 (7.5)	7 (0.1)	935 (100)
순위	8	5	11	7	12	10	8	1	2	4	9	3	6	3	13	

資料：韓國地籍學會, 『韓國地籍學會 消息』, 通卷 第13號, 1996. 註：韓國地籍學會 회원 950명 가운데 자료의 特性上 學界會員 15名은 제외 함

〈표 15〉는 韓國地籍學會의 地域別 會員 現況을 分析한 것이다. 회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지역으로서 전체 회원의 23%인 21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다음은 충청지역이고, 그 다음으로는 전남과 경남이 공동 3위이고 서울은 8위, 부산은 5위, 대구는 1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학회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韓國地籍學會는 地方會員이 94.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된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할 경우에 참여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분석된다.

(2) 職業別 會員의 現況

〈표 16〉은 韓國地籍學會 회원들의 職業別 現況을 學界, 所官廳, 地籍公社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에 의하면 韓國地籍學會 會員의 70.6%는 地籍公社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所官廳으로 27.8%가 地籍職公務員으로 나타났다. 學界는 겨우 1.6%로 매우 적은 학자들이 학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會員의 職業別 現況

職業	學界	所官廳	地籍公社	總計
會員數	15명(1.6%)	264명(27.8%)	671명(70.6%)	950명(100%)

資料：韓國地籍學會, 『韓國地籍學會 消息』, 通卷 第13號, 1996.

4) 學術活動의 現況

學會의 目的은 學術活動을 통해 이룩된다. 따라서 學會活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學術活動이며, 學術活動은 學術大會, 學會誌發刊, 專門書籍發刊 등으로 나타난다.

學術大會는 논문과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학이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학회지의論

文은 일정한 심사만 거치면 게재되므로 學術大會보다 비중을 적게 두는 것이 學會의 一般的인 趨勢이다.

(1) 學術大會

學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學術活動은 바로 學術大會이다. 學術大會라는 명칭은 학회별로 學術發表大會, 學術競演大會, 論文發表會, 論文發表大會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표 17〉은 한국지적학회가 간간 개최한 학술대회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韓國地籍學會가 學術大會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하여 행사를 주최한 것은 1985년 3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개최된 “最新 地籍制度에 관한 國際學術會議”가 그 표시이다. 이후 국제학술강연회와 간담회를 각각 1회 실시한 것을 다 학회와 비교할 때 韓國地籍學會 20年 역사로 볼때에 매우 저조한 활동으로 분석된다.⁸⁾

〈표 17〉 地籍學會 學術大會 開催 現況

日時	學術大會名	主管興否
1985년 3월 7일 3월 8일	최신지적제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주최: 한국지적학회 후원: 내무부, 지적공사
1993년 8월 25일	도지등록제도의 통합 방안 간담회	주관: 한국지적학회
1996년 5월 25일	한스크노프카사 초청 국제학술강연회	주최: 한국지적학회 후원: 내무부, 지적공사
1996년 12월 15일	한국지적학회 설립 20 주년 기념 학술강연회	주관: 한국지적학회

資料：韓國地籍學會, 『韓國地籍學會報』, 通卷 第1-8號, 1997-1989; 『韓國地籍學會誌』, 通卷 第1-3號, 1993-1995; 『韓國地籍學會消息』, 通卷 第1-13號, 1990-1996;

8) 學會別 學術行事的 現況은 92年 2회이상 학술행사를 개최한 學會가 58.5%, 93年은 57.5%로 나타났다. 韓國地籍學會는 20年 역사에서 平均 1회이상의 學術大會를 치르지 못한 상황이다.

學會에서 學術大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學術活動은 學術誌를 發刊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회에서 발간되는 定期刊行物は 1,504가지이며⁹⁾ 이 가운데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는 7종에 불과하다.¹⁰⁾

韓國地籍學會는 韓國地籍學會報라는 이름으로 8회를 발간하였으며, 韓國地籍學會誌라는 이름으로 3회를 발간하여 總 11회의 학회지를 발간하였다. 창립 20주년으로 볼 때 학술지의 발간이 년 1회도

앞으로 學術誌의 量的·質的 發展을 위해서는 초 소한 교육부가 성한 기준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¹¹⁾

〈표 18〉은 韓國地籍學會가 지금까지 발행한 學術誌의 現況을 정리한 것이다. 韓國地籍學會報도 발간된 것이 通卷 8권이며, 韓國地籍學會誌로 발간된 것이 通卷 3권이다.

學會 20年の 정통성 측면에서 발간순서에 의하 通卷 11권을 分析하기로 한다.

〈표 18〉 學術誌 發刊 現況

學會誌號數	日時	論文題目	發表會員	會員職業
創刊號	1977년 11월 15일	論文이 掲載되지 않음	.	.
2	1979년 12월 31일	地籍三角點의 經緯度 計算	李正夫	地籍公社
		三分割 漸近計算法	李亨鍾	地籍公社
		和蘭의 地籍制度	姜泰奭	地籍公社
3	1981년 8월 31일	大韓地籍公社의 制度 및 運營의 變遷	金鏞鎬	地籍公社
		多方向 交會의 最確值	李亨鍾	地籍公社
		三角測量의 發達과 將來	金英培	地籍公社
		Traverse測量의 改善方向	金載德	地籍公社
4	1982년 12월 1일	測地理論과 座標計算	金鍾炫	地籍公社
		對點檢法 -數值確定地域 筆界點에 대한-	李亨鍾	地籍公社
		有心多角網의 同時綜合精密調整에 關한 考察	金英培	地籍公社
		舊小三角地域에서의 基線三角網 平均計算	金鍾炫	地籍公社
		航空寫眞을 利用한 地籍測量	趙辰九	地籍公社
5	1984년 12월 1일	測量裝備 使用에 對한 研究	朴常進	地籍公社
		自然現象이 光波測距機에 미치는 影響에 關하여	姜錫眞	學界
6	1985년 9월	專門大學 地籍科 教育課程開發에 關한 研究	權圭泰 金鎮哲	學界
		台灣 都市地區 地籍圖 重測事業	顏慶德	外國人
		中華民國 土地登記制度	陳鳳琪	外國人
		土地登記一元化	多田光吉	外國人
		都市地域의 地籍再調查事業	西谷昇	外國人
		韓國의 地籍制度	朴淳杓	所官廳
		地籍再調查事業에 對한 研究	曹在洙	地籍公社
		韓國의 地籍再調查事業 方向	姜泰奭 權圭泰 姜錫眞	學界
7	1986년 11월 1일	地籍測量의 數值化에 關한 연구	朴常進	地籍公社
		한국지역교육구십년사	李鎮昊	地籍公社
		三角測量과 三邊測量 綜合調整에 關한 比較研究	朴常進	地籍公社
		多角測量의 調整法에 對한 研究	金載德	地籍公社

9) 韓國學術振興財團, 前編書, p.24.

10) 7種의 學術誌를 발간하는 學會는 大韓化學會, 韓國化學工學會, 韓國物理學會, 大韓藥學會, 大韓機械學會, 韓國分子生物學會와 개인이 발간하는 構造工學 및 力學이라는 學術誌이다.

11) 教授新聞社, 教授新聞 第83號, 1996. 2. 26. 教育部는 學術誌의 質的 제고를 위해 "學術誌 評價 指標 開發 및 優秀學術誌 育成方案"이라는 보고서에서 우수한 학술지는 定期的으로 발행되는 全國誌로서, 3인 이상의 公정한 審査委員에 의해 審査되며, 1년에 20篇이상의 論文을 掲載해야 하며, 論文의 掲載率이 75%以上일 것으로 하고 있다.

8	1989년 4월 30일	개화기 지적 및 측량에 관한 연구	李鎮昊	地籍公社
		大東輿地圖에 關한 研究	金相洙	所官廳
		地籍圖根測量 誤差의 統計的 檢定	姜泰奭	學界
9	1993년 9월 20일	地籍測量에 있어서 測量값의 最大誤差 檢出을 위한 統計的 技法	姜泰奭 吳珥均	學界
		圖解地域의 境界決定과 誤差處理	姜泰奭 吳珥均	學界
		新都市 地番賦與 事例分析 및 問題點 研究	金旭南	學界
		地籍測量시스템의 發展方向에 關한 研究	池鍾德	學界
		都市內 住居移動 決定因자에 關한 研究	김윤기	學界
10	1994년 8월 30일	韓國 地籍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	柳炳燦	所官廳
		地籍圖上 格子點의 設定 및 數值測量 活用 方案에 關한 研究	姜錫眞	學界
		地籍圖管理시스템의 發展模型	姜泰奭	學界
		GIS 構築을 위한 數值地籍簿의 活用に 關한 研究	吳珥均 李康元 皇甫相源	學界
		地籍測量의 成果圖作成에 있어서 CAD시스템의 活用方安	沈禹燮	地籍公社
11	1995년 12월 20일	韓國의 地籍測量과 發展方向에 關한 研究	曹圭田 金正浩	學界
		土地情報시스템 構築을 위한 地籍圖의 數值化 方案	姜泰奭	學界
		中國과 北韓의 土地所有權 特性에 關한 研究 - 土地法을 中心으로 -	金甲洙 金秋潤 吳珥均	學界
		地上境界의 法律的 效力에 關한 研究	金泰勳	地籍公社
		舊韓末의 地籍測量事業에 關한 研究	池鍾德	學界
		地上寫眞測量에 의한 精密圖面의 製作	오원진, 배연성	學界

資料 : 韓國地籍學會, 『韓國地籍學會報』, 通卷 1-3號, 1977-1989; 『韓國地籍學會誌』, 通卷 1-3號, 1993-1995.

註: 會員의 類型은 발표 당시의 職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내부부는 소관청의 분류에 포함하고, 共同研究는 주된 研究者를 中心으로 分類하였다.

이상 學會誌에 발표된 논문을 發表者別, 內容別, 會員의 職業別로 나누어 分析하기로 한다.

먼저 <표 18>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 발표된 論文은 總 46篇이다. 이 가운데 外國의 발표자를 제외한 42篇의 논문이 국내 회원들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 이것을 발표 회원의 職業別, 10年單位別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19>과 같이 要約된다.

<표 19> 發表論文의 職業別·年代別 現況

年代 職業	1976- 1986년	1987- 1995년	1976- 1995년
學界	3	14	17(40.5%)
所官廳	1	2	3(7.1%)
地籍公社	19	3	22(52.4%)
發表論文數	23(54.8%)	19(45.2%)	42(100%)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論文은 地籍公社에 재직 중인 회원이 발표한 것으로서 총 22편으로 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學界로 17편으로 40.5%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地籍公社에 재직 중인 회원들은 韓國地籍學會가 창립된 初期 10년 동안에 대부분 발표된 논문들이며 후반기에 들어서는 학회의 본래적인 모습대로 학자들의 學術活動이 활발하게 進行되고 있다. 따라서 차후 韓國地籍學會도 일반학회처럼 학술활동의 주된 회원은 학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문을 회원 個人別로 分類하면 <표 20>과 같이 整理된다.

<표 20> 會員別 論文發表 現況

順位	論文掲載 論數(42편)	論文發表 會員名	論文發表會 員數(33명)
1	7	강태석(공동 논문 3편)	1
2	3	이형중, 박상진, 강석진(공동논문 1편), 오이균(공동논문 3편)	4

3	2	이진호, 김중현, 김영배, 김재덕, 저종덕, 권규태(공동 2)	6
4	1	이정부, 김주호, 조진구, 박순표, 조재열, 석창덕, 김상수, 김옥남, 김윤기, 류병찬	22명
		심우섭, 김태훈, 김진철(공동1), 이강원(공동1), 황보상원(공동1), 유환희(공동1), 조규전(공동1), 김정호(공동1), 김갑수(공동1), 김추윤(공동1), 오원진(공동1), 배연성(공동1)	

註: 本 順位는 學會誌에 논문 발표시 參與度에 대한 順位이므로 共同論文도 參加者別 1回的 參與로 보았다.

〈표 20〉은 韓國地籍學會가 지난 20년 동안 學會誌에 掲載된 論文 46篇의 現況을 會員別로 分類한 現況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인 4명으로 4편의 單獨論문을 발표하였다. 국내 회원은 33명이 42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태석회원이 3편의 共同論文과 4편의 單獨論文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균회원은 공동 논문 3편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논문의 유형별로는 21명의 회원이 單獨論文 34편을 발표하고, 14명의 회원이 共同論文 8편을 발표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러한 현황을 타 학회와 비교하면 논문의 양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學術活動의 活性化側面에서 定款의 規定에 따른 地籍賞을 論文賞, 功勞賞, 學術賞으로 분류하여 地籍賞 施賞制度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¹²⁾

다음은 발표자를 國籍別로 나누어 보면 〈표 21〉과 같이 정리된다.

〈표 21〉 論文 發表者의 國籍別 現況

分類 會員數	國內會員	外國人	計
發表者 數	33인	4인	37인
論文 數	42편 (91.3%)	4편(8.7%)	46편

지금까지 韓國地籍學會에 게재한 외국인의 논문으로는 4인이 4편을 게재함으로써 8.7%의 게재율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편의 논문도 순수하게 논문에 투고한 것이 아니라 1985年 3月 7日부터 8日까지 韓國地籍學會가 주최한 “最新 地籍制度에 관한 國際學術會議”에 발표한 논문을 학회가 전제함으로 발표된 것이다.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있어 外國의 學會間, 會員間, 學術誌間, 學術大會間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22〉는 지금까지 발표된 論文의 研究類型別 現況을 나타낸 것이다. 총 42편의 논문 가운데 83.3%인 35편의 논문이 單獨論文으로, 16.7%인 7편의 논문이 共同論文으로 게재되었다. 학술활동 측면에서는 공동논문의 발표가 학회발전에 기여도가 크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거나 이름 게재식 공동연구의 형태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앞으로 地籍學會誌에도 진정한 共同研究의 論文이 게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論文의 質의 向上을 위해 論文作成方法도 人文·社會分野와 自然科學分野의 論文으로 分類하여 작성하고 論文誌의 編輯도 區分되어야 할 것이다.

〈표 22〉 論文의 研究 類型別 現況

研究類型	單獨論文	共同論文	總計
論文數			
發表論文數	35(83.3%)	7(16.7%)	42(100%)

〈표 23〉은 韓國地籍學會가 지금까지 발행한 消息誌 通卷13號 總 232페이지에 대한 目次를 調査한 것이다.

1990年 6月에 창간 발행된 韓國地籍學會 消息誌는 通卷 13號까지 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발간된 총 페이지는 232페이지로서 韓國地籍學會의 消息誌로서의 귀중한 情報傳達의 役割을 해왔다. 그러나 韓國地籍學會 消息誌로서 內容의인 側面과 優先順位에서 거리가 먼 지면등이 횡당되어 있다.

즉 연구원의 교육일정표, 지적기술사문제, 매년도의 결산 및 수정예산 등은 내용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分析된다.

예나하면 學會의 消息誌는 會員全體 또는 多

12) 定款旅行規程 第10條는 地籍賞의 수여를 管理分野, 技術分野, 教育分野로 設定하고 있다.

數에 관련된 내용에 우선적으로 게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筆陣도 學會員중에서 多樣하게 선정하여 원고청탁식 편집으로 學會에 대한 參與 意慾을 자극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회원과 지회 그리고 地籍學界의 다양한 동정들이 게재 되도록 하고 論述의 글들은 짧은 지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學術誌에 게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學會誌와 消息誌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消息誌의 發刊回數를 年 4회이상으로 발간함으로써 회원간의 學術情報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 韓國地籍學會 消息誌 發刊 現況

號數	發行日時	重 要 內 容	重要筆陣
1호	1990년 6월	취임사 : 조성구(1P) 지적학회의 발전방향 : 최용규(1P) 지적측량시행기관 내용 소개 : 박상진(2P) 1990년도 연수원교육 계획(2P) 지적측량프로그램(도근편) : 오복동(9P) 측량기초수확 : 김정호(5P) 회원명단(5P) 총24P	조성구 최용규 박상진 오복동 김정호
2호	1990년 12월	1990년도 정기이사회 개최(1P) 1989년도 결산 및 1991년 예산(1P) 지적측량프로그램(수치편) : 오복동(6P) 측량기초수확(삼각함수) : 김정호(5P) 소식란(3P) 총16P	오복동 김정호
3호	1991년 6월	지적학회의 역할 : 박순표(1P) 독일의 지적제도 소개 : 석창덕(3P) 1991년도 연수원교육 계획(2P) 지적삼각측량프로그램 : 오복동(14P) 소식란(2P) 총24P	박순표 석창덕 오복동
4호	1991년 12월	1991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 (1P) 1990년도 결산 및 1992년도 예산(1P) 지적법령 개정안내 : 류병찬(3P) 화란의 지적제도 개선방법 소개 : 석창덕(4P) 소식란(3P) 총12P	류병찬 석창덕

號數	發行日時	重 要 內 容	重要筆陣
5호	1992년 6월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설립총회 개최(1P)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설립취지서(1P) 1991년도 결산 및 1992년도 예산(1P) 1992년도 연구원 교육계획(2P) 지적확정측량(중심점측량) : 박상진(7P) 일본의 토지구획정리사업 : 심우섭(4P) 과년도 지적기술사시험 출제문제(1P)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정관(5P) 소식란(2P) 총12P	박상진 심우섭
6호	1992년 12월	1992년도 정기 이사회 개최(1P) 19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1P) E-500을 이용한 면적측정부 작성 : 양기수(5P) 마드리드 국제측량사연맹 삼임위원회에 다녀와서 : 차득기(2P) 정관시행규정(2P) 과년도 지적기술사 시험출제(2P) 소식란(3P) 총24P	양기수 차득기
7호	1993년 6월	전산교육장 신설(1P) 1992년도 결산 및 1993년도 수정예산(1P) 기타원점 점함에 관한 고찰 : 양기수(5P) 최신측량기술의 전망 : 김태훈(6P) 1993년도 연수원 교육계획(2P) 과년도 지적기술사 시험 출제문제(2P) 소식란(3P) 총20P	양기수 김태훈
8호	1993년 12월	토지등록공시제도의 통합방안 간담회 개최(1P) 1993년도 사업계획 및 추정예산(안)(1P) 종합토지정보시스템구축 : 김상수(4P) GIS도면에 의한 불부합지의 해석 : 김진기(4P) 과년도 지적기술사 시험 출제문제(2P) 소식란(1P) 총16P	김상수 김진기
9호	1994년 6월	1994년도 정기이사회 개최(1P) 1993년도 결산 및 1994년도 수정예산(1P)	성윤모 이상종

號數	發行日時	重要內容	重要筆陣
9호	1994년 6월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소고 : 성윤모(3P) 영산포기선(서단점)복구 보고서 : 이상중(2P) 사무자동화계획 소개(2P) 1994년도 연수원 교육계획(3P) 과년도 지적시술사시험 출제문제(2P) 소식란(2P) 총16P	성윤모 이상중
10호	1994년 12월	1994년도 임의이사회 개최(1P) 1995년도 사업계획 및 추정예산(안)(1P) 개정 지적법폐쇄 : 류병찬(2P) 지적법개정에 따른 위성측량방법소개 : 박상진(2P) 1995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안내(3P) 소식란(4P) 총16P	류병찬 박상진
11호	1995년 6월	1994년도 정기이사회 개최(1P) 1994년도 결산 및 1995년도 추정예산(1P) 한국지적학회 회장직 취임에 대하여 전국지적인에게 호소합니다 : 김갑수(2P) 부동산실명제 제정 시행 : 류병찬(2P) 호주의 측량관련 대학의 현황소개(1) : 이상중(5P) 1995년도 연수원 교육계획(2P) 소식란(3P) 총20P	김갑수 류병찬 이상중
12호	1995년 12월	지적업무세미나 개최(1P) 1996년도 사업계획 및 추정예산(안)(1P) 지적조사사업추진 기본계획 : 류병찬(2P) 호주의 측량 관련대학 현황소개(2) : 이상중(6P)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위촉(1P) 199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안내(2P) 분과위원회위원장회의 개최(1P) 소식란(2P) 총16P	류병찬 이상중
13호	1996년 6월	한스크노프박사초청 국제학술강연회 개최(1P) 1995년도 결산 및 1996년도 예산(2P) 한스크노프박사 초청 학술강연회 요지 : 김석주(2P)	김석주

號數	發行日時	重要內容	重要筆陣
13호	1996년 6월	각 지회별 회원 현황(1P) 1996년도 연수원 교육계획(4P) 소식란(6P) 총16P	김석주

資料 : 韓國地籍學會, 『韓國地籍學會 消息』, 通卷 第1-13號, 1990-1995.

(3) 書籍 發刊

韓國地籍學會는 書籍發行에 關한 學術活動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많은 단행본을 제작하였으나 本 研究에서는 著者나 發行處 기타 韓國地籍學會의 名稱이 기재된 것만을 대상으로 調査하였다.

〈표 24〉 書籍 發刊 現況

發刊日時	書籍名	出版社	著者	備考
1977년 3월25일	地籍法解説	보문출판사	원영희	편찬 한국지적학회
1979년 4월1일	地籍學原論	흥익문화사	원영희	편찬 한국지적학회
1983년 8월30일	地籍關係法令集	양지사	신라지적학회	
1987년 8월15일	地籍手法帖	양지사	신라지적학회	
1989년 3월20일	地籍測量計算問題集	신라출판사	편저 한국지적학회	저자 김제택으로도 발행됨
1989년 12월15일	地籍關係試驗問題集	신라출판사	편저 한국지적학회	
1991년 2월28일	地籍基準點測量(三角篇)	삼선출판사	김제택, 김정호, 박상진, 최한식	표지에 한국지적학회표시
1993년 8월30일	地籍關係法令集	양지사	신라지적학회	
1996년 2월10일	地籍關係法令集	양지사	신라지적학회	

資料 : 韓國地籍學會, 『韓國地籍學會報』, 通卷 第1-8號, 1977-1989; 『韓國地籍學會誌』, 通卷 第1-3號, 1993-1995; 『韓國地籍學會消息』, 通卷 第1-13號, 1990-1996.

韓國地籍學會가 최초로 서적 발간사업에 착수한 것은 1977년 3월 25일 발행된 元永喜 會長의 地籍法解説이며 그 다음이 地籍學原論이다.¹³⁾

이 두권의 서적은 〈표 24〉와 같이 저자와 출판사가 따로 있으며 단지 편찬만을 韓國地籍學會가 실시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처음 측량학총론으로

13) 韓國地籍學會, 『韓國地籍學會報』, 創刊號, 1977. p.16.

계획하였으나 지적측량학시리즈로 발간되어 地籍測量 李富發 著, 地籍圖根測量 崔龍振 著, 地籍三角測量 元永喜 著로 1977년 4월 10일 발간되었다.

지금까지 韓國地籍學會의 서적발행은 지적연수원이나 지적공사, 지적학회, 내무부, 출판사, 인쇄소, 발행처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앞으로의 단행본 제작에 있어서는 분명한 표기가 요망되며 학회명으로서의 서적발간시에는 韓國地籍學會의 對外的인 位相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할 것이다.

4. 韓國地籍學會의 問題點과 發展方向

1. 韓國地籍學會의 問題點

1) 學會 運營의 未熟

社團法人 韓國地籍學會의 定款은 1992년 2월 25일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1976년 8월 31일 創立된 韓國地籍學會의 定款과 目的, 事業, 會員, 會議, 財政 등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1992년 2월 25일 작성된 정관은 기존의 韓國地籍學會를 社團法人 韓國地籍學會로 명칭만 변경하여 등록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定款을 制定하여 기존의 韓國地籍學會를 解散하였다. 따라서 學會誌의 通卷番號, 會長의 就任 世代, 學會의 歷史 등 기존 韓國地籍學會의 正統性이 단절되었다. 그러나 消息誌는 예외로 기존 韓國地籍學會의 通卷

을 이어받아 90년 6월 이후 계속 발행되고 있다.

社團法人 韓國地籍學會는 學會 創立 20周年 紀念 學術講演會를 준비중이며, 대부분의 일반회원들은 代議員의 書面議決로 이루어진 學會解散을 실감하지 못하고 기존의 학회가 社團法人으로 登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學會의 正統性 問題에 대한 整理가 필요하다.

또한 任員團은 왜 學會運營에 있어 原則的인 規定이 적용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原因과 對策을 分析·評價하고 민첩하게 대처하는 運營上의 完善한 指導力을 보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正會員이 모여서 定期總會를 開催하지 못하고 代議員에 依存하고 그것도 書面決意에 의해 學會의 20년이 運營된 것이다.

2) 定款의 非 現實性

學會에 있어서 定款은 한 나라에 있어 憲法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定款의 構成과 內容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學會의 運營은 크게 制限을 받게 된다.

현재의 定款은 대부분의 規定들이 과거 1976년도의 틀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어 學會로서 本來的인 役割과 機能을 추구하기에는 많은 制限을 받고 있다.

〈표 25〉는 定款上의 非 現實的인 內容들을 調査 整理한 것이다.

〈표 25〉 定款의 非 現實的인 內容

條	條文	重 要 內 容	問 題 點
제1조	명칭	이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라 한다.	학회의 명칭 변경이므로 정관 개정 보다는 정관 개정이 바람직하다.
제7조	정회원의 자격	1. 국내 및 국외의 대학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강사나 교수로서 지적 혹은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을 전공하는 자 또는 이의 전공으로 학사, 석사 및 박사의 학위를 가진 자 2. 판사, 검사, 변호사 및 이에 준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 3. 국내 및 국외의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서 지적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을 전공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시직에 관한 자격소지자 5. 준회원으로서 5년을 경과한 자 6. 준회원으로서 연구실적이 현저한 자	지적학회 정관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회원의 자격을 무엇보다도 지적학에 관련된 학술활동의 능력을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사, 검사, 변호사가 정회원의 자격이 있는 등 학력이나 자격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성이 부족하다.

條	條文	重 要 內 容	問 題 點
제13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과 준회원은 회비를 납무하고 이 회의 모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모든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권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회원중에서 선임한다.	학식, 경험, 덕망이라는 비현실적인 기준보다는 정회원으로서는 경력,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제16조의 3	임원의 임기	감사이외의 모든 임원은 임기가 3년이지만 서면총회시는 그 해 12월 31일로 임기가 완료한다.	서면총회시 12월 31일 까지로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제19조의 2	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순으로 회장을 대리한다.	소관청, 공사, 학계로 구분하여 지회를 정하고 그 순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20조	회장단의 겸직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 및 학술위원이 된다.	소수의 임원이 겸직함으로써 다수의 회원이 학회운영에 참석할 수 없다.
제23조	기관의 종류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 고문, 학술회의, 특별위원회, 집행부	학회운영을 위한 기구를 최대한 단순화 해야 한다.
제25조의 2	총회소집	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한다.	정기총회의 일시를 구체화하여 정기적 행사화하여 임원의 재임기간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제37조의 1	학술회의	학술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제 1,2,3 부회장은 각각 제 1,2,3 부의장이 된다.	회장단의 지나친 겸직 허용은 권력의 편중현상과 다수회원의 학회활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제41조	분과의 종류	11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학술적 분류보다는 기능적 분류로서 학술적 분류가 바람직하다.
제49-52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사회의 역할로도 충분하다.
제54조의2	집행부조직	국장은 상사의 명을 받는다.	권위적인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제56조의2	지회	지회에 지회장을 두되 회장이 임명한다.	지회의 운영은 지회 회원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9조	서면회의	모든 회의는 서면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정기총회와 학회해산 등을 서면총회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條	條文	重 要 內 容	問 題 點
제60조	정기총회의 요구	회원의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비상회의 소집은 회원의 30%가 요구할 때가 바람직하다.
제66조	공고방법	한국지적학회 게시판에 공고	지적학회는 사무실과 게시판이 없다.
부칙2조의 3	경과조치	한국지적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가 설립등기완료됨과 동시에 해산되고, 한국지적학회 회원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학회의 해산보다는 학회명칭의 변경으로 정관개정이 이상적이다.

3) 잘못된 會員의 構成과 會員資格

學會는 學者들의 모임이며 學問의 體系化를 위해 學術活動에 전념하는 會員들의 自律의인 모임이다. 따라서 韓國地籍學會의 定款上의 目的도 학회의 목적과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가진자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韓國地籍學會는 회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그 제한 정도가 學術活動과는 乖離된 규정으로 <표 25>의 第7條처럼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구성된 회원들은 학회운영에 무관심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韓國地籍學會는 950명이라는 大規模의 會員을 가지고 있지만 회원의 특성상 정회원이 참석하는 定期總會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地籍公社의 會員이 70.6%, 所官廳이 27.8%, 學界가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地域的으로는 地方會員이 94.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學會보다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正會員들이 참여하는 定期總會를 개최하지 못하고 대부분 理事會가 마련한 案들을 代議員들이 書面議決로 決定한다.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는 이유는 定款 第7條 正會員의 資格이 잘못되었다는 점과 學會의 構成員이 地籍公社와 所官廳의 地籍職公務員들로서 이들은 필요에 의해 자율적인 학회 가입보다는 직장에서의 권유로 學會에 가입해 회비만을 납부하고 學會活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회원이면서도 學會活動에 參與하지 않는 會員이 絶對多數라는 점이다.

4) 會長團의 過多한 權限 獨占

韓國地籍學會會長은 會長團會議 議長, 常任직 理事와 學術委員, 學術會議 議長, 特別委員會 議長, 支會長 任免權, 事務局長 및 事務局 職員의 任免權, 特別委員會의 委員 任免權, 理事會 議決을 통한 회원의 資格停止 및 除名處理 權限, 學術會議 議決에 거쳐 分科委員長 및 委員의 解任 權限등을 가지고 있어 학회 운영에 대한 權限이 會長에게 지나치게 偏重되어 있어 만약 會長의 學會運營의 未熟이나 指導力에 問題가 있을 경우 學會의 正常的인 運營이 곤란하게 된다.

5) 學會事務室의 未確保

學會가 學者들의 學術活動의 場이라면 學會事務室은 學會의 心臟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學會들이 學會長의 研究室을 따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韓國地籍學會도 創立 20周年이 되었지만 아직도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定款上 學會의 심장 역할을 할 주된 事務室은 서울특별시에 두기로 되어 있지만, 韓國地籍學會의 사무실은 확보되지 않고 오직 지적공사 연수원에 연락처를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회원상호간 정보교류의 공간이 없으며 집행부서와의 유기적인 정보선달에도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학회들은 빈곤한 재정과 零細的인 學會運營을 하면서도 事務室을 有償이든 無償이든 確保하고 있다. 學會에 대한 正常的인 運營은 學會空間을 확보하는데서 부디 시작될 것이다.

2. 韓國地籍學會의 發展方向

1) 定款改正

動을 위해서는 特定團體에 加入해야 한다.

이러한 特定團體는 “社會團體申告에 관한 法律”과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에 따라 設立申告 또는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상에 있어 定款은 必須의인 要素이다.

韓國地籍學會의 定款은 1976年 8月 31日 제정되어 2번의 개정이 있는 후 既存의 學會는 解散이 되고 새로운 社團法人 韓國地籍學會가 定款을 제정

하기 인 용 의 게 기 쓰 기.

本 研究는 韓國地籍學會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學會의 問題點을 다섯가지로 한정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問題點도 改善方向도 모두 定款上에 問題가 있기 때문이다.

〈표 25〉에서 제시된 問題點을 〈표 26〉과 같이 解決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21世紀를 향한 韓國地籍學會의 未來像을 照明할 수 있는 귀중한 指標가 될 것이다.

〈표 26〉 定款의 改正 方向

條 項	題 目	改 善 方 向
제1조	명 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라 칭한다.(개정 1992년 2월 25일)
제7조	정회원의 자격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지적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 2. 대학에서 지적학을 전공하고 지적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대학을 졸업하고 국토개발 관련 기사1급 이상 소지자 4. 기타 본 학회 임원 3명 이상이 추천한 자
제13조	회원의 의무	정회원과 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상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임원의 자격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10년이상의 학회활동을 한 자로서, 회장과 부회장은 과거 본 학회 임원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사와 감사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의 3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회장, 부회장, 이사는 3년이며 감사는 2년으로 한다. 서면총회에 의한 경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 2	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는 부회장 가운데 가장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제20조	회장단의 겸직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그러나 학술위원은 될 수 없는 것으로 함
제23조	기관의 종류	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 학술회의, 집행부, 특별위원회는 삭제한다.
제25조의2	총회집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0월에 소집한다.
제26조	총회의 의장 및 부의장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회장중에서 연장자가 된다.
제37조의1	학술회의	학술회의는 학술담당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의장은 분과위원장 가운데 연장자로 한다.
제41조	분과의 종류	지적학, 지적제도, 지적측량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49-52조	특별위원회	삭제
제54조2	집행부조직	상사의 명을 받아서를 삭제한다.
제56조의2	지회	지회에 지회장을 두되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59조	서면회의	정기총회와 이사회, 학회의 해산등은 서면총회로 할 수 없다.

條 項	題 目	改 善 方 向
제60조	정기총회의 요구	비상회의 소집은 회원의 30%, 대의원 50%가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66조	공고방법	한국지리학회지와 지리학회소식에 공고
부칙2조의3	경과조치	삭제

이상과 같이 定款을 改正함으로써 韓國地籍學會의 正統性을 確保할 수 있다. 따라서 韓國地籍學會 20年에서 30年 단절된 學會誌의 通卷番號의 連續性, 消息誌 通卷의 連續性, 學會長의 在任世代數의 連續性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學會運營의 폭을 넓게하여 젊은 研究者들의 思考가 學會運營에 반영되도록 任員의 일정 비율을 新進研究者들에게 할당하는 制度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젊은 研究者들의 學問的인 감각을 살리고 世代間의 화합과 學會運營의 永續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젊은 研究者들을 學會運營에 적극적으로 參與할 수 있는 制度的 장치로서 副會長 1名, 理事 3名, 學術委員 3名은 30-40代 젊은 會員에게 할당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회원들의 分派主義도 해결될 것이다.

2) 學會員의 資格 強化

學會의 量的 擴大보다는 質的 成長을 위해 定款上的 學會員의 資格을 新規會員부터는 大卒以上の 學歷을 소지한 자로서 地籍學關聯 學問을 專攻한 者를 대원직으로 <표 26>의 第7條와 같이 會員의 資格을 強化한다.

3) 原則에 의한 學會運營

定款은 社會團體이든 公益法人이든 必須的인 規程이다. 따라서 韓國地籍學會도 定款이 정한 내용에 따라 原則的인 學會運營을 해야 할 것이다. 30年 韓國地籍學會는 定款 第59條와 定款施行規程 第7條에 의해 여러가지 사정으로 會議召集이 어렵거나, 輕微하거나, 定例的인 事案의 議決은 書面議決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總會에서 決定하도록 規定되어 있는 學會解散 뿐만 아니라 定款改正, 任員選出 등을 議決 처리했다. 그것도 正會員의 전체가 아닌 定款 24條 2項에 따라 總會는 代議員으로써 構成할 수

있다는 條項을 적용하여 代議員에 의한 書面議決로 學會 20年을 이끌어온 것이다. 一時的으로 例外的인 條項을 適用할 수 있으나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學會運營에 소의된 많은 회원들이 반감을 가지고 學會運營에 협조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등의 副作用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定款上的 諸 規定을 遵守되되 例外的인 規定보다는 原則的인 條項을 우선하는 運營이 필요하다.

4) 學術活動의 量的 質的 水準의 提高

學會運營의 結果는 學術活動에 의해 評價되는 것이다. 이러한 學術活動은 學術大會와 論文誌 發行 그리고 專門圖書의 出版으로 具體化된다. 韓國地籍學會는 지금까지 年 1回의 學術大會와 學術誌 發刊, 그리고 半年間으로 韓國地籍學會 消息을 발행해 왔다. 또한 지적에 관련된 專門圖書의 發刊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量的인 會員의 數에 비해 學術活動은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定期學術大會는 每年 定期總會와 때를 같이하여 年 1回 실시하고, 學術誌 發刊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2回로, 消息誌는 季刊으로 年 4回 發行하도록 한다.

또한 專門圖書의 발간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地籍學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을 정하고 이에 대한 高等學校, 專門大學, 大學, 大學院에서의 差別化된 教育課程과 教材開發에 대한 體系的인 論議가 要求된다. 學術誌의 질적 제고를 위해 論文審査의 질적 강화와 編輯委員會를 확대 개편하여 새로운 학술지로서의 변모를 시도하기 위해 論文作成方法을 人文·社會分野와 自然科學分野로 2원화하고, 編輯方法도 2원화하여 게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地籍賞 施賞制度를 活性化하되 論文賞과 功勞賞, 學術賞으로 구분하여 우수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에게는 論文賞을, 學會發展에 기여한 회원에게는

功勞賞을, 기타 학문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는 學術賞을 수여하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5) 學會 事務室의 確保

現在 學會活動을 하고 있는 748個의 學會 가운데 86.2%만이 學會事務室을 確保하고 있다. 이들이 學會事務室을 確保하는 方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方法은 學會長의 研究室을 學會의 事務室로 活用하는 것이다. 현재 韓國地籍學會에 있어서도 가장 효율적인 方法으로서 大學의 研究室로 學會의 事務室을 移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事務室 運營에 대한 賃貸料와 事務要員에 대한 人件費, 각종 事務器機와 通信 등의 經費를 節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韓國地籍學會는 胎動地인 地籍公社를 줄곧 떠나지 않고 20년을 자라서 대학생이 될 나이가 되었다. 청년의 학생이 더 많은 經驗과 學問을 위해 大學을 가야하듯이 韓國地籍學會도 이제는 大韓地籍公社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대학으로 향하는 청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1世紀를 향한 韓國地籍學界의 理論과 實務, 産學의 有機的인 造化의 틀속에서 地籍學問의 體系의 發展은 곧 韓國地籍制度의 發展에 寄與하게 될 것이다.

5. 結 論

本 研究는 今年으로 創立 20周年을 맞은 韓國地籍學會의 過去와 現在를 分析하고 그 結果를 土臺로 未來에 대한 發展的인 對案을 提示함으로 韓國地籍學會의 發展에 寄與하고자 하는 것이 研究의 目的이다. 이러한 研究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研究方法은 文獻調査法과 面接法을 병행하여 現存하는 748個의 學會를 母集團으로 調査·分析한 統計模型과 韓國地籍學會의 運營實態를 比較·分析함으로써 發展的인 對案을 導出하였다.

以上の 研究方法으로 韓國地籍學會를 分析한 結果 韓國地籍學會가 안고 있는 問題點은 첫째로 學會 任員陳의 學會運營에 대한 未熟으로 1976年 8月 31日 創立된 韓國地籍學會는 1992年 2月 25日 創立總會를 실시한 社團法人 韓國地籍學會에 의해 해산됨으로서 既存 韓國地籍學會의 正統性問題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둘째는 定款上의 規定들이 非現實的으로 존재하고 있어 학회가 本來의 目的대로 발전 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셋째는 잘못된 定款上의 會員資格으로 인해 學會의 構成員이 學會發展에 障礙的인 役割을 하고 있으며, 넷째는 會長團에게 過多한 權限이 偏重되어 있어 會長團의 학회운영에 대한 未熟은 全體 學會發展에 惡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다섯째는 學會活動의 心臟役割을 해야 할 學會事務室이 아직도 확보되지 않고 胎動地인 大韓地籍公社에 연락처만 두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韓國地籍學會는 正常的인 學會活動이 困難한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러한 韓國地籍學會가 當面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代案으로는 첫째가 定款을 改正함으로써 韓國地籍學會의 正統性을 회복하고 學會運營의 폭을 넓게함으로써 新進研究者들을 학회운영에 관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젊은 연구자들의 學問的 感覺을 살리고 世代間의 和合과 學會運營의 永續性을 확보할 수 있어 學會構成員의 凝集力이 강화될 것이다. 둘째는 新規會員부터는 學會員의 資格을 強化함으로써 학회 量的인 膨脹보다는 質的인 成長을 추구함으로 學會의 目標을 達成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原則에 의한 學會運營으로써 多數의 會員들이 반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는 學術活動의 量的·質的인 水準의 提高를 위해 定期學術大會는 每年 定期總會와 때를 같이하여 年 1回 實施하고, 學術誌의 發刊은 前·후반기로 나누어 年 2회를, 消息誌는 季刊으로 年 4회를 發行하도록 한다. 출판사업으로서 專門圖書의 發刊과 高等學校, 專門大學, 大學, 大學院의 教材를 差別化하도록 제직함으로써 學問發展에 기여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學會事務室의 確保方案으로서 86.2%의 學會들이 사용하는 方法으로 賃貸料의 事務要員 등 최소경비가 드는 學界의 研究室로 移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韓國地籍學會는 貧困한 財政, 硬直된 學會運營으로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學會運營의 폭을 넓게하여 全體會員이 참여할 수 있는 多樣한 Event 學術行事를 마련하여

할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韓國의 學會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財政亂 속에서 學會의 分列化, 學緣에 의한 派閥, 學會運營의 主流와 非主流의 對立, 元老會員과 少壯派會員과의 葛藤 등 學會内外의 거세 試鍊을 克服하고 만 20살의 청년 韓國地籍學會는 나날이 發展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元永喜, "地籍學會의 創設을 主張한다.", 『地籍』, 通卷 第15號, 大韓地籍公社, 1975.
2. 李鑛昊, 『어느 측량사의 수기』, 서울 : 도서출판 에이멘, 1988.

社, 1996

4. 大韓地籍公社, 『大韓地籍公社五十年史』, 1989.
5. 韓國學術振興財團, 『學會總覽』, 1994.
6. 韓國大學新聞, 『韓國大學年鑑』, 1996.
7. 韓國地籍學會, 『韓國地籍學報』, 通卷 第1-8號, 1975 - 1989.
8. _____, 『韓國地籍學會誌』, 通卷 第1-3號, 1993 - 1995.
9. _____, 「韓國地籍學會 消息」, 通卷 第1-13號, 1990 - 1996.
10. _____, 定款, 1976.1992.
11. _____, 定款施行規程, 1977.1992.
12. _____, 準會員規則, 1983.